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종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149호)

2026. 3.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돌봄에 대한 보험급여 신설	2

I. 개요

1. 전종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5149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종덕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12. 11.

(3) 회 부 일 : 2025. 12.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입자가 동거가족 중 중증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 등을 돌보고 있는 경우, 본인은 아파도 온전히 쉴 수 없는 경우가 많음. 이는 건강보험을 통해 보험급여를 받더라도 돌봄을 중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임.

이에 건강보험 내에서 돌봄을 대체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돌봄대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가족 내 돌봄제공자도 아프면 돌봄 책임에서 벗어나 온전히 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돌봄에 대한 보험급여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입자에 대하여 돌봄에 대한 보험급여로서 방문돌봄서비스나 돌봄수당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51조의2(돌봄에 관한 특례) ① 공단은 가입자가 돌봄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거가족을 돌보는 경우 그 돌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방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돌봄수당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그 밖에 동거가족의 구체적 범위, 돌봄에 대한 보험급여의 구체적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2026. 1. 1.

나. 검토의견

□ 2024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장애인복지법」¹⁾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약 263만명에 이르고, 그 중 심한 장애로 분류되는 장애인은 약 96.6만명임. 또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²⁾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별표3]에 따른 중증질환자는 약 173만명, 같은 고시 [별표4], [별표4의2]에 따른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는 약 120만명에 이름.

□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의 동거가족은 본인이 아파도 돌봄을 위하여 온전히 쉴 수 없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현행법령³⁾에서는 건강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 2)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별표2]에 따라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임.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영 제19조 제1항 [별표2] 제3호 마목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 사용의 경우를 포함한다)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3과 같다.
- 제5조(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영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나목2)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 사용의 경우를 포함한다)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영 별표2 제2호 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희귀질환 대상은 별표4와 같고 중증난치질환은 별표4의2와 같다.
-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 제49조(요양비) ① 공단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제98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 중인 요양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준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한다.
-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보험 급여로서 본인의 요양급여,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장애인등의 보조기기, 건강검진 등만을 규정하고, 돌봄에 대한 보험급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또는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를 돌보는 가입자에 대하여 돌봄에 대한 보험급여로서 방문돌봄서비스나 돌봄수당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가족 내 돌봄제공자도 돌봄 책임에서 벗어나 쉴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먼저, 건강보험 제도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⁴⁾에서 돌봄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보건복지부는 현재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아가족양육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등의 사업⁵⁾을 수행 중이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제52조(건강검진) ① 공단은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① 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급여는 임신·출산(유산 및 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진료비로 한다

4)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참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에 대한 돌봄 지원 주요정책

법률」도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으로 그에 따른 통합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며, 돌봄과 관련한 여러 법률안들⁶⁾이 제안된 상황임.

- 참고로, 국민건강보험은 장애인인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보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할 수 있고,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는 본인부담률을 인하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산정특례 제도를 운영 중임⁷⁾.

□ 아울러, 돌봄에 대한 보험급여를 신설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8년에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기획재정부는 2026년 적자가 발생하고 2033년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6)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2210878호,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2025.6.17.),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2213805호,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2025.10.29.), 「돌봄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215557호, 손술의원 대표발의, 2025.12.23.), 「돌봄정책기본법안」(의안번호 제2215602호, 손술의원 대표발의, 2025.12.24.)

7)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① 요양급여를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이하 “본인 일부부담금”이라 한다)를 본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다른 요양급여에 비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영 제19조 제1항 [별표2] 제3호 마목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 사용의 경우를 포함한다)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3과 같다.

제5조(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영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 나목2)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 사용의 경우를 포함한다)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영 별표2 제2호 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희귀질환 대상은 별표4와 같고 중증난치질환은 별표4의2와 같다.

< 국회 예산정책처 건강보험 재정전망(2024.12.) >

[표 196]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2025~2033년

(단위: 조원, %)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연평균 증가율
수입	106.8	114.7	121.2	128.0	135.8	144.2	153.1	162.2	169.1	5.9
지출	110.3	122.1	130.9	137.6	146.5	158.9	172.3	184.4	199.7	7.7
재정수지	-3.5	-7.5	-9.7	-9.7	-10.7	-14.8	-19.2	-22.1	-30.7	-
누적 준비금	26.3	18.9	9.2	-0.5	-11.2	-26.0	-45.2	-67.3	-98.0	-

주: 1. 전망액은 경상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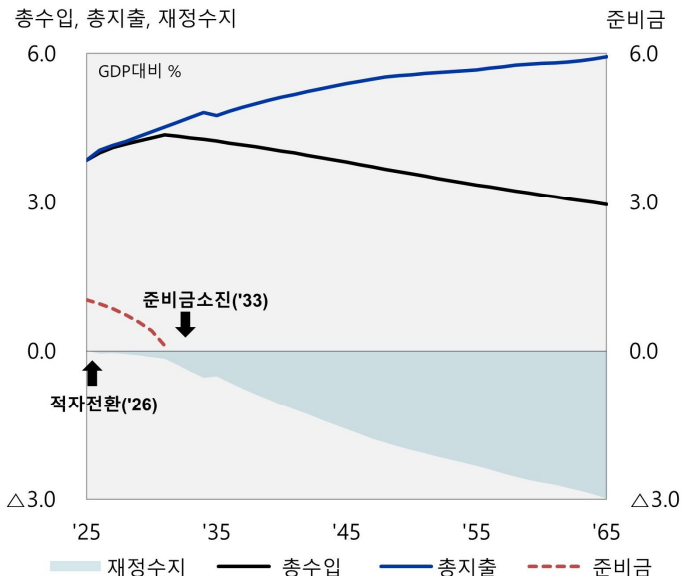
2. 건강보험료율은 2026~2028년은 해당 기간 보험료를 인상율을 적정수준(1.5% 내)으로 유지한다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24.8.30.)」에 따라 '23년 인상율(1.43%) 유지, '29년 이후는 보험료를 동결 전 최근 3년 평균 인상율(2.05%) 적용, '32년부터는 보험료를 상한(8%) 적용

3. 본 추계는 정부안에 따른 것으로 향후 사업 추진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나보포커스」 제89호, 2024. 12. 20.

< 기획재정부 건강보험 재정전망(2025.9.) >

기준 시나리오 주요 추계결과



인구·거시 전제별 주요 지표

시나리오	적자전환	준비금 소진	'65년 재정수지 (GDP %)
성장대응	'26년	'32년	△3.4
인구대응	'26년	'33년	△2.8
기준	'26년	'33년	△3.0
인구악화	'26년	'33년	△3.3
성장악화	'26년	'33년	△2.7

자료 :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2025.9.3.)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

다.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장애인의 돌봄 제공자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가족 등 돌봄 제공자를 위한 서비스 및 수당 지원은 가입자의 질병 치료 및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취지와 고유의 목적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으며,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돌봄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제공하는 방문 돌봄서비스 및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이 개별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2026.3. 시행 예정),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기획예산처

- 건강보험 보험급여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 등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돌봄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할 경우 법 상 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있고, 돌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근거하여 여러 지원 정책을 추진 중으로, 기존 제도와와의 정합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가족 내 돌봄제공자도 아프면 돌봄 책임에서 벗어나 온전히 쉴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함. 다만, 현재 신

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돌봄서비스는 건강보험 보험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외 다양한 법률에서 돌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어 개정안의 내용이 타 법령의 돌봄 규정과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중복수급의 문제도 배제할 수 없으며, 돌봄에 대한 1차적인 책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점과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으로 장애인 등 가족 돌봄에 대해 건강보험 보험급여를 확대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대한의사협회

- 가족 돌봄 부담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자체에는 공감하나, 돌봄 문제를 건강보험 급여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제도 취지와 재정 구조, 타 복지제도와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타당성이 부족하며, 가족 돌봄 부담 완화는 건강보험이 아닌 별도의 안정적인 재원과 종합적인 복지정책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적절한 제도 설계 없이 추진되는 등 개정안에 대해 반대함.

문 의 처
02)6788-5503

참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에 대한 돌봄 지원 주요정책

구 분	사 업 내 용																																
○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인 18세 이상 등록 경증장애인에게 수당 지급 <table><tr><th>구 분</th><th>생계·의료 급여수급자</th><th>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th><th>(생계·의료급여) 보장시설수급자</th></tr><tr><td>경증장애인</td><td>6만원</td><td>6만원</td><td>3만원</td></tr></table>	구 분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 보장시설수급자	경증장애인	6만원	6만원	3만원																								
구 분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 보장시설수급자																														
경증장애인	6만원	6만원	3만원																														
○ 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인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에게 수당 지급 <table><tr><th>구 분</th><th>생계·의료 급여수급자</th><th>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th><th>(생계·의료급여) 보장시설수급자</th></tr><tr><td>중증장애아동</td><td>22만원</td><td>17만원</td><td>9만원</td></tr><tr><td>경증장애아동</td><td>11만원</td><td>11만원</td><td>3만원</td></tr></table>	구 분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 보장시설수급자	중증장애아동	22만원	17만원	9만원	경증장애아동	11만원	11만원	3만원																				
구 분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 보장시설수급자																														
중증장애아동	22만원	17만원	9만원																														
경증장애아동	11만원	11만원	3만원																														
○ 장애인연금	○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25년 단독가구 138만원, 부부가구 220.8만원) 이하인 자에게 연금 지급 (기초급여+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법」상 근로 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 <table><tr><th colspan="2">구 분</th><th>계</th><th>기초급여</th><th>부가급여</th></tr><tr><td rowspan="2">생계·의료 급여수급자</td><td>65세 미만</td><td>432,510원</td><td>342,510원</td><td>90,000원</td></tr><tr><td>65세 이상</td><td>432,510원</td><td>—</td><td>432,510원</td></tr><tr><td rowspan="2">주거·교육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td><td>65세 미만</td><td>422,510원</td><td>342,510원</td><td>80,000원</td></tr><tr><td>65세 이상</td><td>80,000원</td><td>—</td><td>80,000원</td></tr><tr><td rowspan="2">차상위초과</td><td>65세 미만</td><td>372,510원</td><td>342,510원</td><td>30,000원</td></tr><tr><td>65세 이상</td><td>50,000원</td><td>—</td><td>50,000원</td></tr></table>	구 분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65세 미만	432,510원	342,510원	90,000원	65세 이상	432,510원	—	432,510원	주거·교육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미만	422,510원	342,510원	80,000원	65세 이상	80,000원	—	80,000원	차상위초과	65세 미만	372,510원	342,510원	30,000원	65세 이상	50,000원	—	50,000원
구 분		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생계·의료 급여수급자	65세 미만	432,510원	342,510원	90,000원																													
	65세 이상	432,510원	—	432,510원																													
주거·교육 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미만	422,510원	342,510원	80,000원																													
	65세 이상	80,000원	—	80,000원																													
차상위초과	65세 미만	372,510원	342,510원	30,000원																													
	65세 이상	50,000원	—	50,000원																													
○ 장애인자립자금	○ 가구당 무보증대출시 1,200만원 이내(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담보대출시 최대 5,000만원 이내 가능('21년 1분까지 까지 금리 연 최고 3%, '21년 2분기 신규자부터 금리 연 최고 2% 적용),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가구의 성년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	○ 의료급여 2종 등록장애인,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만성질환자,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1차 의료기관 외래 : 본인부담금 1,000~1,500원 중 750원 지원 - 2, 3차 의료기관 외래 및 1, 2, 3차 입원 진료시 :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전액 (10~15%)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는 지원하지 않음 ※ 단, 2·3인실 입원료는 지원하지 않음																																
○ 장애인활동지원	○ 만 6세~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인 자로, 소득 관계없이 활동지원급여(바우처) 제공 ○ 활동지원급여(종합조사 결과 산정) : 월 1,000천원(약 60시간)~ 7,980천원(약 480시간) ○ 특별지원급여(요건 충족 시 최대 6개월 지원) : 335~1,332천원																																

구 분	사 업 내 용																		
○ 발달재활서비스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가구 기준 10,976천원) 가구의 18세 미만 장애 아동(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음악재활, 인지·행동재활 등 장애아동 수요에 따른 다양한 재활 서비스 제공 ○ 소득수준별 바우처 지원금 <table><tr><th>구 분</th><th>바우처 지원액</th><th>본인 부담금</th></tr><tr><td>기초수급자</td><td>월 25만원</td><td>면제</td></tr><tr><td>차상위계층</td><td>월 23만원</td><td>월 2만원</td></tr><tr><td>차상위 초과~65% 이하</td><td>월 21만원</td><td>월 4만원</td></tr><tr><td>65% 초과~120% 이하</td><td>월 19만원</td><td>월 6만원</td></tr><tr><td>120% 초과~180% 이하</td><td>월 17만원</td><td>월 8만원</td></tr></table>	구 분	바우처 지원액	본인 부담금	기초수급자	월 25만원	면제	차상위계층	월 23만원	월 2만원	차상위 초과~65% 이하	월 21만원	월 4만원	65% 초과~120% 이하	월 19만원	월 6만원	120% 초과~180% 이하	월 17만원	월 8만원
구 분	바우처 지원액	본인 부담금																	
기초수급자	월 25만원	면제																	
차상위계층	월 23만원	월 2만원																	
차상위 초과~65% 이하	월 21만원	월 4만원																	
65% 초과~120% 이하	월 19만원	월 6만원																	
120% 초과~180% 이하	월 17만원	월 8만원																	
○ 언어발달지원	○ 장애(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부모를 둔 12세 미만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필요한 언어발달서비스 제공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7,313천원) 가구 대상 ○ (서비스 내용)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청능재활, 독서지도, 수어지도 등 ○ 소득수준별 바우처 지원금 <table><tr><th>구 분</th><th>바우처 지원액</th><th>본인 부담금</th></tr><tr><td>기초수급자</td><td>월 22만원</td><td>면제</td></tr><tr><td>차상위계층</td><td>월 20만원</td><td>월 2만원</td></tr><tr><td>차상위 초과~65% 이하</td><td>월 18만원</td><td>월 4만원</td></tr><tr><td>65% 초과~120% 이하</td><td>월 16만원</td><td>월 6만원</td></tr></table>	구 분	바우처 지원액	본인 부담금	기초수급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계층	월 20만원	월 2만원	차상위 초과~65% 이하	월 18만원	월 4만원	65% 초과~120% 이하	월 16만원	월 6만원			
구 분	바우처 지원액	본인 부담금																	
기초수급자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계층	월 20만원	월 2만원																	
차상위 초과~65% 이하	월 18만원	월 4만원																	
65% 초과~120% 이하	월 16만원	월 6만원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가정에 장애아돌보미를 파견을 통한 돌봄서비스 제공,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에게 휴식지원 프로그램 제공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무료 이용, 소득기준 초과 시 시간당 4,870원 (본인부담율 40%)으로 이용, 정부지원시간 초과 시 전액 자부담 - 휴식지원 프로그램은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지원하며, 장애아가족 문화·교육 프로그램,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자조모임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 후견심판 청구 및 청구절차비용 지원(실비지원,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가능), 후견인 활동 지원(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등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보호자 ○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캠프, 동료상담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 등 - 1인당 최대지원 금액 : 240천원 - 돌보미 및 캠프(여행도우미) (발달장애인 2인당 1명까지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 1인당 월 160천원 바우처 지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월 3~4회, 회당 50분~100분,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구 분	사 업 내 용			
○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 만 18세 이상 등록 성인 발달장애인			
	○ 이용자 욕구에 기반 교육, 음악·미술, 영화·연극, 미술관·박물관 방문 등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 이용자 그룹유형별 차등 단가 지급			
	구성인원	1인 집중지원서비스	2인그룹	3인그룹
	적용요율	150%	100%	80%
	시간당	24,930원	16,620원	13,300원
○ 방과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 만 6세~만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			
	○ 취미·여가,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조활동 등 이용자의 욕구 및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			
	○ 이용자 그룹유형별 차등 단가 지급			
	구성인원	2인그룹	3인그룹	4인그룹
	적용요율	100%	90%	80%
	시간당	16,620원	14,960원	13,300원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적(7일)으로 24시간 돌봄지원체계 마련, 연간 최대 30일				
*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일시적 돌봄(5일)				
○ 시·도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남·여 2개소씩 설치 / 최중증 긴급돌봄센터 2개소(대구, 경북)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지적·자폐성 장애인 중 ①도전행동이 심하고,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사소통 능력에 심각한 제약을 가지고 있으며, ②개인 및 사회환경 특성에 따른 지원 필요도도 강해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 장애 정도와 지원 필요도 등을 고려하여 3가지 서비스 중 적합한 서비스에 배치하여 1:1 맞춤형 서비스 제공				
- (24시간 개별 지원) 주중 지역사회 낮활동과 야간돌봄을 포함한 24시간 돌봄 서비스 제공(25년, 340명)				
- (주간 개별 지원)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인프라에 시설 보강과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개인별 맞춤형 낮 활동 서비스 제공(25년, 500명)				
- (주간 그룹형 지원)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여 낮시간에 그룹형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배치 지원(25년, 1,500명)				

자료 : 보건복지부